

선	기관의장
람	



제670호 2023년 9월 15일

발행자 : 익산시청
발행처 : 홍보담당관

고 시

- 익산시 고시 제2023-170호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01
- 익산시 고시 제2023-17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고시 03

공 고

- 익산시 공고 제2023-2434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안) 주민의견청취 09
-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60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1
-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63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2

회								
람								

익산시 고시 제2023-170호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

익 산 시 장

1. 사업명 :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춘포면의 잠재력과 지역 고유테마를 살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위치 :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용연리, 덕실리 일원
4. 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군비 1,200)
5.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5개년)

6. 주요사업내용

구 분	사업 내용	비 고
	합 계	
기초생활 기반화충	봄나루 문화센터 잔디광장·주차장 등	
지 역 경 관 개 선	춘포역사공원	
	주민교육	
지 역 역 량 강 화	지역활성화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제 경 비	설계비, 감리비 등	

7. 사업 시행자 : 익산시장

8. 사업효과 : 춘포면 소재지의 기초생활거점 기반정비 및 기능강화

9.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서는 익산시 농촌활력과에 비치되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수립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농촌활력과(☎ 063-859-7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고시 제2023-17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된 「참좋은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의 산 시 장

2022년 9월 15일

1. 명 칭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2.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일 : 2018. 10. 15.(창립총회 개최)

다. 목적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등

3. 주요내용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4. 고시 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 게재

5. 문의 : 익산시 기획예산과 기획계 ☎ 063-859-5189

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1부.

[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권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총회와 임시위원회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회총회는 연 1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회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운영 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9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 ② 부담금은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2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 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익산시 공고 제2023-2434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5일

익산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사회복지시설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	증) 26,437	26,437	금회	

나.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면적: 26,437 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통해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함

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 이하	4층 이하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가.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A	8~10	국지도로	77	대로1-1	소로2-16	일반 도로	-	금회	노선 신설

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2-A	• 노선신설(B=8~10m, L=77m)	•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주변마을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063-859-5591)

4. 관련도서 : 『계재생략』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60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 2023. 9. 11. ~ 2023. 9. 30. (20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일	사유	비고
35보 2774	BMW 520d xDrive (WBAJC510XJWB86507)	문*정	2023. 9. 11.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는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다.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직권말소 될 수 있고, 무등록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익산시장
(관인생략)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63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 2023. 9. 13. ~ 2023. 10. 2. (20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일	사유	비고
27너 8782	쏘나타 (KMHE341CBFA003990)	문*영	2023. 9. 13.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는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다.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직권말소 될 수 있고, 무등록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3일

익산시장
(관인생략)